

● 질병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 ●

□ 수급자격 요건(시행규칙 별표2 제9호)

- 원칙적으로 경미한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“불인정”되며, 아래의 요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중증 질병·부상의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.

1. 질병, 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것
2. 이직회피를 위해 사업장에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또는 병가를 신청하였으나, 사업장 사정상 질병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치료를 위해 부득이 이직하였을 것

□ 필요 서류

1. 진단서(퇴사 당시의 상태를 나타내는 진단서)

- 진단서의 필수 기재내용

- ① 병명, 발병시기(또는 초진일), 진단일(퇴사 이전), 진단주수
- ② 진단 당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웠는지 여부

- 진단일은 퇴사일 이전(가장 가까운 날짜)이어야 하며, 치료 예상기간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(13주 이상의 장기치료 진단) 이상 진료가 필요함.

- 진단기간이 3개월(13주) 이상이라도 아래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.

- ① 주 1~2회 정도 통원 물리치료 또는 약물 처방일 경우
- ②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조정(조퇴 등)이 가능하나 본인이 자발 퇴사한 경우

2. 사업주의 질병 퇴사 관련 확인서

-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직무전환,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하였으나, 사업장 규정 및 여건상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경우에 한해 실업급여 가능 (취업규칙 등 인사규정 확인 가능)

3. 퇴사 후 진료내역 (진료비 납입 확인서 및 입·퇴원 확인서 등)

- 퇴사 후 병원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

4. 의사 소견서 (수급자격신청일 현재의 건강상태)

- 치료 호전 또는 종료 후 현재 구직활동 및 재취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기재

※ 퇴직일 전·후(1, 2)번을 준비 후 치료가 완료되어 다시 구직활동이 가능할 때 (3, 4)번의 서류를 추가로 준비 하여(총 4가지 서류 지참) 신청하시면 “심사” 통해 수급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.